

대전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1가합110312 판결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조흥찬

변 론 종 결 2024. 3. 19.

판 결 선 고 2024. 4. 25.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19,249,291원 및 그중 219,249,282원에 대하여 2021. 10. 27.부터 2021. 11. 29.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21. 4. 22.자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4. 26. 접수 제35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로 약칭)는 원고와 사이에 2016. 11. 3. 신용보증원금 21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11. 3.부터 2017. 11. 2.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에 제공하고 2016. 11. 1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7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갑 제1, 3호증).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은 피고 A가 신용보증기간 중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주채무 및 종속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호)을 상환하기로 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

3) 원고는 2019. 4. 1.부터 현재까지 보증채무 이행금액 상환의무에 관한 지연손해금율을 연 8%로 정하고 있다(갑 제7호증).

나.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A는 2021. 4. 22.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1. 4. 26. 피고 B에게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와 접수 제3552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갑 제9호증).

다. 원고의 대위변제 및 위약금, 법적 절차 비용 발생

1) 피고 A는 2021. 6. 11.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을 변제하지 못하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고, 원고는 2021. 10. 27.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219,290,510원(= 원금 216,000,000원 + 이자 3,290,510원)을 변제하였고(갑 제4, 5호증), 같은 날 피고 A에 지급해야 할 미환급보증료 41,228원과 상계하였다.

2) 전항과 같은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확정손해금 9원 발생하였다(갑 제6호증).

[인정 근거] ○ 피고 A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 3항(자백간주) ○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구상금)

원고는 피고 A를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하였고, 현재 남아 있는 대위변제금 잔액은 219,249,282원(= 원금 216,000,000원 + 이자 3,290,510원 - 미환급보증료 41,228원)이다. 이 대위변제금에 대한 확정손해금은 9원이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8%이다.

따라서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대위변제금 219,249,282원 및 확정손해금 9원의 합계 219,249,291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219,249,282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1.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1. 29.까지는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1)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A와 피고 B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던 당시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1. 4. 22.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21. 6. 11.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원고가 2021. 10. 27.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채권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 A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나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대구 달서구 C아파트 D호에 채무자를 피고 A로, 채권최고액을 360,00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이 설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같은 증거, 갑 제2,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A는 2016. 11. 18.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따라 기업구매자금대출을 받은 외에도 2015. 6. 10., 2020. 6. 10.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아 2021. 7. 21.자 기준으로 270,000,000원(이 사건 신용보증 대상 대출 채무), 800,000,000원, 50,155,391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었고, ② 피고 A와 중소기업은행 사이에 2021. 1. 7.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출금 채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③ 중소기업은행이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받고도 별도의 물적 담보를 요구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구상금 채권에 대해 이 사건

근저당권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전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무자력

이 법원의 서대전세무소,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21. 4. 22.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2021. 상반기에는 매출이 급감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A가 소유한 적극재산에 관하여 본다. 피고 A가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2021. 4. 22. 당시 시가는 피고 A가 피고 B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123,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 B가 실제로 피고 A에게 매매대금으로 정한 금액을 송금한 사정(을나 제1호증),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이 사건 부동산과 유사한 오피스텔의 실제 거래 가격(을나 제4호증) 등에 비추어 123,000,000원 상당으로 보인다.

반면 피고 A는 2021. 7. 21.자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50,155,391원, 800,000,000원, 270,000,000원(이 사건 신용보증 대상 대출 채무) 합계 1,120,155,39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갑 제4호증), 2021. 4. 22.경에도 비슷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을나 제5, 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E에 대한 50,000,000원의 손해배상채무, F에 대한 50,000,000원의 퇴직금 채무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2021. 4. 22.경 소극재산의 가액은 1,220,155,391원 상당임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소극재산(1,220,155,391원)이 적극재산(123,000,000원)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

다. 피고 회사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법리

가)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46483 판결 참조).

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 그 매각 목적이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2) 사해행위 판단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대금으로 지급받은 금원을 정당한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채무초과에 있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등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할 것인데, 앞서 채택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A가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자금 융통의 목적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유입된 매수대금을 E나 F에게 변제한 것이 정당한 변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합계 1,120,155,39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 A가 보유한 유일한 부동산의 시가는 1억 2,300만 원으로 상당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②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A는 피고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대부분을 E에 대한 기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변제(5,000만 원), F에 대한 퇴직금채무 변제(5,000만 원)로 사용하였다.

③ 피고 B는 E와 F가 정당한 채권자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였을 뿐, 이들이 피고 A가 추진하고 있던 사업 지속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이들에 대한 변제로 인하여 피고 A가 얼마만큼의 변제자력을 얻었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주장·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F가 실제로 피고 A에서 근무한 직원인지, 5,000만 원의 퇴직금 수령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조차 없어 F가 정당한 채권자인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④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단순한 담보 제공행위가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자체를 피고 B에게 이전시키는 행위이고, 피고 B의 G은행 계좌거래내역에 따르면 피고 A는 2021. 4. 29. 피고 B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1), 2021. 5. 21.부터 매 월 차임 명목으로 보이는 77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A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월 차임의 지급이라는 새로운 부담을 지면서까지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으로 E와 F의 채무를 변제해야 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인다.

3) 사해의사 판단

피고 A의 채무 규모 및 앞에서 살펴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A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로 인하여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라. 피고 B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법리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그가 선의라는 사실, 즉 채무자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리라는 것을 몰랐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할 때에도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을나 제1호증의2, 제2호증의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정한 123,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 갑 제8호증, 이 법원의 G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B는 2020. 3. 30. 피고 A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피고 A의 재정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 A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피고 B에게 월 차임을 지급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사용·수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점, ③ 피고 A는 B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50,000,000원을 F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전부터 F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이후까지 피고 B가 F와 수시로 고액의 금전거래를 하였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 B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마. 소결

피고 A와 피고 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4. 22.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B는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21. 4. 26. 접수 제35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함석천, 판사 박경환, 판사 조수연

별지

1) 피고 B는 월 임차료의 선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아이비케이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피고 A는 피고 B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면서 비고란에 ‘임대차보증금’이라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월 정기적으로 77만 원이 피고B에게 지급된 사정에 비추어보면, 1,000만 원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7만 원은 월 차임 명목으로지급된 것으로 보인다.